

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
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남 병 국

나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의거 조성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변경

- 당초: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- 변경: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·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

○ 주민지원기금 설치 조문 추가(안 제1조 및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의 제명에 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’을 명시하고, 제1조와 제9조에 기금 관련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